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2. 6 선고 2020가단33498 판결 [명의신탁해지에 의한
소유권이전등기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11. 8.

판 결 선 고 2021. 12. 6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
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

원고는 2010년경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의 매수자금을 제공하되, 그 매수인 명의는 피고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. 그 후 피고가 그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

2. 판단

그러나 갑 제1 내지 14호증(가시번호 포함)의 각 기재만으로는,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,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진영

(별지)

목 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아파트 F동

[도로명 주소] 서울 관악구 G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0층 공동주택

지3, 지2 각 79.602㎡ 각 지하계단실

지1 82.416㎡ 지하계단실

지1 53.28㎡ 아파트

1 내지 20층 각 434.991㎡ 각 아파트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서울 관악구 D 대 105721.5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5층 H호 철근콘크리트구조 84.96㎡

(대지권의 표시)

대지권 종류: 소유권대지권

대지권 비율: 105721.5분의 44.146 끝.

